

교원인사규정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 ② 방문교수, 대우교수, 연구교수, 기금교수, 겸직교수, 겸임교수,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③ (생략) (신설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동일) ② 방문교수, 대우교수, 연구교수, 기금교수, 겸직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강사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 2 (강사의 임용 기준 등)</p>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채용, 승진, 재임용, 전보, 겸임, 파견, 보직 임면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 4. "승진"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"강사"라 함은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.</u> 4.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채용, 승진, 재임용, 전보, 겸임, 파견, 보직임면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 5. "승진"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3호 신설 기존 3호와 4호는 4호와 5호로 개정</p>
(신설)	<p><u>제4조의2(겸임) ① 총장은 대학내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전임교원을 타 학과 또는 (특수)대학원 소속으로 겸임을 명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임명된 교원을 "겸임교수"라 한다.</u></p> <p><u>② 겸임교수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와 겸임학과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 임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겸임교수가 겸임학과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소속학과 주임교수의</u></p>	<p>겸임교수(전임교원) 임명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규정에 반영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	<p><u>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소속학과 및 겸임학과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겸임교수는 겸임으로 인해 소속학과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겸임학과의 주임교수는 학과업무에 대하여 학과소속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겸임교수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특수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의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의책임시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</u></p>	
제4조의2(파견근무) 총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.	제4조의3(파견근무) 총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.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u></p>	